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
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노형욱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주요 국제행사의 재원 마련 등을 위해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의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를 특례규정을 두어 허용하고 있으나, 허용 기간 만료(2021.12.31.)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(2024.12.31.)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통령령 제21670호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시행령」 부칙 제5조 중 “2021년 12월 31일”을 “2024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745